

제규정관리규정

제정	2008.09.01	1차 개정	2010.02.10
2차 개정	2012.02.10	3차 개정	2014.04.01
4차 개정	2014.08.08	5차 개정	2018.06.01
6차 개정	2020.02.17	7차 개정	2022.10.04
8차 개정	2023.09.11		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와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모든 규정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제 규정”이라 함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본 대학에서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시행세칙 및 내규를 말한다.

1. “규정”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, 학칙에 준거하여 본 대학의 조직과 교직원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시행세칙”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,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3. “내규”라 함은 학칙 및 규정 등의 하위지침으로서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부서의 업무기준이나 수행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제4조(규정화)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.

제5조(순위) 제 규정의 효력은 규정, 시행세칙, 내규의 순위로 우선한다.

제2장 제 규정의 체계

제6조(편성) 본 대학의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총칙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기타 총괄적인 사항
2. 본칙: 기본사항 또는 지침, 절차 등의 기본내용
3. 부칙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 규정과의 관계 및 폐절차, 효력기간 등

제7조(형식) ①본 대학의 제 규정은 제6조의 편성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규정의 항목은 장·절·조·항·호·목의 순서로 하되, 장·절·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여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
 2.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절은 장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조는 장·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 3.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 - 가. 항의 표시: ①, ②, ③, ④,
 - 나. 호의 표시: 1., 2., 3., 4.,
 - 다. 목의 표시: 가., 나., 다., 라.
 - 라. 목 이하의 표시: (1), (2), (3), (4),
 4. 부칙의 조문은 본문 조항에 따라 연장표시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로서 표시한다.
 5.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, 방법, 도해 등은 별표 또는 별지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, 첨가되는 별표 및 별지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.
- ②조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,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,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.

제3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제8조(제정권자) 본 대학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

제9조(주관부서) 본 대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획실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10.4.>

제10조(입안) ①제 규정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관련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입안 하되 규정입안서(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)에 의하여 주관부서로 송부 하여야 하며, 합의 및 입안부서장의 서명은 전자결재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7.>

②제 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소관부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③제 규정의 입안 또는 제정 및 개폐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업무소관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정 및 개폐절차) ①주관부서는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되,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. <개정 2018.6.1.>
- ③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입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내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제정 및 개폐할 수 있으며, 이때 소관부서장은 제정 및 개폐된 내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관련법령, 정관 등의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 반영, 자구 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9.11.>

제11조의2(제 · 개정 내용 예고) [본조신설 2022.10.4.] ①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입안 내용을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③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.
 1. 규정안의 주요내용
 2. 제출의견 접수부서
 3. 의견제출 기간,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
-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, 명칭변경 및 경미한 자구수정 등 단순한 개정을 위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제 규정의 효력 및 관리

제12조(공포) 본 대학의 제 규정의 공포는 주관부서에서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고 및 배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제13조(효력) ①제 규정의 효력은 부칙으로 정하는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.

- ②법령 또는 정관 및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규정, 시행세칙 및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때에는 상위규정이 우선한다.
- ④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해석) ①제 규정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제정 취지에 따라야 하며, 지나친 확대 및 축소 또는 유추해석은 금한다.

- ②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 다만,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.

제15조(관리) 주관부서는 심의 확정된 제 규정을 규정 및 시행세칙별로 구분하여 규정 관리대장 [별지 제4호 서식]에 등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

통보한다. 다만, 관리대장은 대분류에 따라 분책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7.>

제16조(규정집) ①규정 및 시행세칙의 원본은 주관부서가, 내규의 원본은 소관부서가 보관한다.

②주관부서는 제 규정을 수록한 규정집을 발간하여 배부한다.

③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변동이 있는 때에는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추록을 발간, 배포하여 규정집을 가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배포된 규정집은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폐된 제 규정은 가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타) 제 규정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체계와 형식에 따라 재정비하여 규정관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체계와 형식에 따라 재정비하여 규정관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심의(보고)안전
제 2020- 호

○○○규정 제정·개정·폐지(안)

년 월 일

제 출 자	(부서)의장
-------	--------

[별지 제3호 서식]

○○○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
붙임 : ○○○규정 제정(개정) 전문(안)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20.2.17>

규 정 관 리 대 장

분류	규정번호	규 정 명	제정일	개정일	소관부서	비고